

학교법인 대신대학교

<2024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15인	재적이사	12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2인

1.일시 : 2024년 12월 17일 11:00 - 12:20(회의소집통보일: 2024년 12월 9일)

2.장소 : 대신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

3.임원 출석 사항

*참석임원

- 이사(10인) : 유승학, 김재국, 고성현, 이양수, 박영배
이희만, 이상석, 최종남, 정명철, 김정호

- 감사(1인) : 이기덕

*불참임원

- 이사(2인) : 최영은 신용기

- 감사(1인) : 경성현

4. 안건

- 1) 정관 개정의 건
- 2) 이사(개방, 교육경력) 선임의 건
- 3)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4) 교원인사의 건
- 5) 학교현황 보고의 건
- 6) 기타의 건

5. 회의내용

1) 1부 예배 후 이상석이사의 기도로 시작한 후 전회의록(2024학년도 제3차 이사회회의록 2024년 11월 20일 소집)을 유인물로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김재국 이사의 동의와 이희만이 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다.(찬성 10명, 반대 0명)

2) 본 법인의 정관을 별지유인물과 같이 개정하기고 하니 이양수이사의 동의와 이희만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찬성 10명, 반대 0명)

3) 이사선임의 건

(1) 개방이사 선임: 2025년 1월 24일자에 임기만료되는 이양수이사와 신용기이사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해 이양수이사를 제척한 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이양수씨, 김문환씨, 신용기씨, 신창교씨 총 4명을 추천함에 따라 추천된 인원에서 대해서 투표하기로 결의한 후 투표

고성현, 이희만 이기덕

인원 9명의 이사가 투표하니 이양수씨와 신용기씨가 각각 8표, 신찬교씨와 김문환씨가 각 1표를 얻어 이양수씨를 2025년 1월 25일부터 4년간 본법인 개방이사로 선임하기로 하고, 신용기씨를 2025년 1월 25일부터 4년간 본 법인 개방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다.

(2)교육경력 이사 선임: 2024년 9월 25일자로 임기만료된 박현규이사(교육경력), 김대년이사(교육경력)의 후임으로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장활민씨와 추연식씨가 추천되니 추천된 두분에 대해 각각 투표하기로 결의한 후 투표를 진행하니 추천된 두 분 모두 투표인원 10명 전원 찬성이 되어 장활민씨를 2025년 2월 3일부터 4년간 본 법인이사(교육경력)로 선임하기로 하고, 추연식씨를 2025년 2월 3일부터 4년간 본 법인이사(교육경력)로 선임하기로 하다.

4)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추천으로 이양수이사, 박영배이사를 추천하기로 하니 이희만이사의 동의와 이상석이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다.(찬성 10명, 반대 0명)

5) 대신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별지 제청에 따라 먼저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대해서 검토한 후 뷰티케어학과 김성순씨에 대해서는 이희만이사의 동의와 이양수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한후 전임교원 재임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기로 하니, 신학과 이승우씨에 대해서는 김재국이사의 동의와 이희만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하고, 신학과 오민수씨에 대해서는 이희만이사의 동의와 이상석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하고, 신학과 김병희씨에 대해서는 고성현이사의 동의와 박영배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하고, 신학과 임종구씨에 대해서는 이양수이사의 동의와 박영배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하고, 신학과 문배수씨에 대해서는 고성현이사의 동의와 이양수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하고, 교회실용음악학부 김성하씨에 대해서는 이양수이사의 동의와 이상석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하고, 교회실용음악학부 육수근씨에 대해서는 최종남이사의 동의와 이상석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하고, 교회실용음악학부 이재경씨에 대해서는 이희만이사의 동의와 이양수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하고, 교회실용음악학부 위수인씨에 대해서는 이희만이사의 동의와 최종남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하다.(찬성10명, 반대 0명)

- 아 래 -

(1) 전임교원 신규임용

연 번	학과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세부전공	임용기간	임용구분
1	뷰티케어	조교수	김		헤어	2025.3.1.~2027.2.28	비정년

고성현 - 2 - 이희만 아끼리

(2) 전임교원 재임용

연 번	학과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세부전공	임용기간	임용구분
1	신학과	조교수	이			2025.3.1.~2027.2.28	정년
2	신학과	조교수	오			2025.3.1.~2027.2.28	비정년
3	신학과	조교수	김			2025.3.1.~2027.2.28	비정년
4	신학과	조교수	임			2025.3.1.~2027.2.28	비정년
5	신학과	조교수	문			2025.3.1.~2027.2.28	비정년
6	교회실용음악	조교수	김			2025.3.1.~2027.2.28	비정년
7	교회실용음악	조교수	육			2025.3.1.~2027.2.28	비정년
8	교회실용음악	조교수	이			2025.3.1.~2027.2.28	정년
9	교회실용음악	조교수	위			2025.3.1.~2027.2.28	정년

6) 총장이 학교현황에 입시현황, 재정 및 발전기금 모금현황, 외국인 학생 모집현황 및 목표 신규교원 확보, 평가진행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구두로 보고하다.

7) 본 회의 회의록 간서명을 위해 고성현이사, 이희만이사, 이기덕감사로 선정하기로 김재국 이사의 동의와 이양수 이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다.(찬성 10명, 반대 0명)

8)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김재국이사의 동의와 이희만이사의 재청으로 폐회하기로 가결한 후 김정호이사의 기도로 회의를 마치다.(찬성 10명, 반대 0명)

고성현 이희만 이기덕

2024. 12. 17

학교법인 대신대학교 이사회

이 사 장	유 승 학	유승학
이 사	김 재 국	김재국
이 사	고 성 현	고성현
이 사	최 영 은	불 참
이 사	신 용 기	불 참
이 사	이 양 수	이양수
이 사	박 영 배	박영배
이 사	이 희 만	이희만
이 사	이 상 석	이상석
이 사	최 종 남	최종남
이 사	정 명 철	정명철
이 사	김 정 호	김정호
감 사	이 기 덕	이기덕
감 사	경 성 현	불 참

고성현 이기덕 이희만

학교법인 대신대학교 정관개정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임용) ② 학교의 장은 교원이 아닌 자도 임명할 수 있고 임기 만료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70세에 달하지 않는 자라야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1조(임용) ②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이 아닌 자도 임명할 수 있고 <u>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u>
제51조(인사위원회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u>7인 이상</u> 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재82조(임용)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재82조(임용)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며 <u>정년과 관계없는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도록 한다.</u>
제88조의2(대학원장 등) ①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제88조의2(대학원장 등) ① 일반대학원, <u>특수대학원</u> 에 원장을 둔다.
제90조(하부조직) ③ 교무처장은 교양교직과 업무를 겸하고 학생처장은 교목업무를 겸한다.	제90조(하부조직) ③ 삭제
제91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제91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두며 <u>지방 자치단체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상시로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u>
	부칙(2024. 12. 1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고성현 이희만

이기력